

대학일자리센터 운영규정

제정 2018.10.19 개정 2019.09.19

개정 2020.06.02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년고용 및 취업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한시적 특별기구인 '국제 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(이하 '센터'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본 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의 '대학일자리센터 사업지침'에 의거하여 국제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라 칭한다.

제3조(사업 및 역할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대학 내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
2. 진로·취업 등의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
3. 취업상담, 해외취업 등 청년 취업활동 지원
4. 정부 청년고용사업 연계 및 정책 확산
5. 지역 유관기관 및 대학 간 맞춤형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
6.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

제4조(업무) 본 센터는 제3조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.

제2장 조직

제5조(조직 및 구성)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센터장, 팀장, 팀원 등을 둔다.

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, 학생취업처장이 겸직한다.<개정 2019.09.19.>

③ 진로지도 및 취·창업 관련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 진행을 위하여 취업전담교원 및 취업상담사를 둘 수 있다.

④ 취업상담사는 관련분야 실무 유경험자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.

제3장 취·창업운영위원회<개정 2020.06.02>

제6조(취·창업운영위원회) ① 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'국제대학교 취·창업운영위원회'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<개정 2020.06.02.>

② 위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<개정 2020.06.02.>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.<개정 2020.06.02.>

1.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
2. 센터 사업비의 배정 및 집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
3. 센터의 사업성과 및 지표 관리에 관한 사항
4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회의) 취·창업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<개정 2020.06.02.>

제4장 실무위원회

제8조(실무위원회) ① 교내 취·창업지원과 관련된 부서간의 업무 연계 및 조정을 위해 센터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관계부서 팀장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센터의 팀장이 된다.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내 취·창업지원 관련 중요사항 조정
2. 교내 각 기관 취업관련 프로그램 연계성 강화
3. 취·창업 관련 학사제도 개편 등 추진
4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장 청년고용정책 거버넌스

제9조(지역거버넌스) ① 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의 ‘대학일자리센터 사업지침’에 의거하여 지역청년 대상 청년고용정책 홍보 및 진로지도, 취·창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.

② 청년고용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지역 취·창업 지원 관련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평택고용센터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주관하는 지역청년고용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등에 참여한다.

제6장 기타

제10조(재정 및 회계) ① 센터의 운영에 관련되는 재정은 대학부담금, 고용노동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금으로 충당한다.

② 센터의 회계연도는 국제대학교 대학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③ 센터의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주관의 ‘대학일자리센터 사업지침’ 등에 따른다.

제11조(운영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12조(준용규정)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반 규정을 준용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은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이 종료되면 폐지되는 것으로 본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은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이 종료되면 폐지되는 것으로 본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은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이 종료되면 폐지되는 것으로 본다.